

1. 개정이유

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개정(법률 제20581호, '24.12.20.공포 · '25.6.21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및 승인절차 삭제(안 제8조)

1) (현행)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 개설기준* 준수 의무화 → (개정) 삭제

*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, 필요 부대시설(쉼터, 화장실, 주차장, 관수용 물탱크,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), 신청서 첨부서류(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) 구비

2) (현행)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→ (개정) 삭제

나.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1) (현행)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미비
→ (개정)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)”을 “(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개설승인”을 “개설”로,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한다.

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목적 및 용도
2. 운영기간 및 분양기준
3. 출입 및 안전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
5. 농자재 및 농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장위치 및 면적
2. 전담인력 및 부속시설
3. 운영프로그램
4.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공영도시농업농장의 <u>개설 승인</u>)① 공영도시농업농장의 <u>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제8조(공영도시농업농장의 <u>개설</u>) <u><삭 제></u>
1. <u>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</u>	<u><삭 제></u>
2. <u>텃터, 화장실, 주차장, 관수용(灌水用) 물탱크,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</u> <u>출 것</u>	<u><삭 제></u>
3. <u>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추</u> <u>출 것</u>	<u><삭 제></u>
② <u>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③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</u>	<u><삭 제></u>

<u>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.</u>	
④ (생략)	①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운영목적 및 용도</u> <u>2. 운영기간 및 분양기준</u> <u>3. 출입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</u> <u>5. 농자재 및 농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<신설></u>	③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농장위치 및 면적</u> <u>2. 전담인력 및 부속시설</u> <u>3. 운영프로그램</u> <u>4.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</u>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영도시농업농장 <u>개설승인</u>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한다.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----- <u>개설</u>----- -----<u>시·도지사</u> 또는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이-----.

